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이만희 · 김미애
추경호 · 서범수 · 김기웅
배준영 · 김 건 · 권영진
서명옥 · 진종오 · 김소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,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·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,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가뭄·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	제22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가뭄 · 홍수 등 물 관련</u>
	<u>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</u>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